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3·15의거 지역 범위 확대 〉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5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3·15의거의 지역 범위를 “마산지역”에서 “광주 및 마산지역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u>마산지역</u> 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u>광주 및 마산지역 등</u> ----- ----- -----.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임(법 제2조).

이후 200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3·15의거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¹⁾ 2021년에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음.²⁾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3.12.] [대통령령 제22074호, 2010.3.12., 일부개정]

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0.3.12>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의2	3·15 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처	3·15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이하생략)

그런데,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봉기가 광주 등 타 지역에서도 일어났으나, 현행법은 3·15의거의 지역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³⁾

특히, 광주에서는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 금남로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인 ‘곡(哭) 민주주의 장송(죽은 사람을 장사지내어 보냄) 데모’가 일어났고,⁴⁾ 2017년부터는 ‘광주3·15의거 기념식’을 광주시 주관으로 거행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3·15의거의 지역 범위를 마산지역에서 광주 및 마산 지역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마산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항거도 공식적인 3·15의거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의 3·15의거에 대한 정의가 입법 당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2)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1.] [법률 제18301호, 2021.7.20., 제정] 제안이유 중

3) 연합뉴스, “‘3·15 의거 광주서 먼저’…민주주의 장송 데모 재연(종합)”, 2014.3.15.

4) 연합뉴스, “‘광주 3·15, 마산의거 촉발 후 4·19혁명 도화선 됐다’”, 2019.3.15.

5)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시, 제65주년 광주3·15의거 기념식 거행”, 2025.3.16.

이와 관련하여 3·15의거에 대한 진실규명을 담당하는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는⁶⁾ 사건 발생 당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마산지역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총 466건의 진실규명을 완료하였으나,⁷⁾ 경남과 전북 외 지역의 진실규명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⁸⁾

《 3·15의거 관련 거주지역에 따른 진실규명 요청 건수 및 진실규명 건수 》

(2025.5.26.기준, 단위: 건)

의거 당시 거주지역	진실규명 요청	진실규명	비고
전북 ⁹⁾	3	3	
경남	489	463	
계	492	466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마산지역 이외의 3·15의거 활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사실관계 확인, 의거 지역 확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법 제3조(진상규명)**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7) 신청인 조사 외에 1960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마산지역에서 있었던 ‘할아버지·할머니 시위’와 ‘부산시위대 마산원정시위’를 직권조사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음.

8) 해당 조사는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외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한 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타 지역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문의도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9) 김주열(당시 마산상고 합격) 모친 권찬주, 친형 김광열, 김광열의 친구 하용웅(당시 마산상고 졸업반) 등 3명은 전북지역 거주자(주소지)로서 3·15의거 당시 마산 시위에 참여한 자로 진실규명 되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15의거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료의 확인,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한 사실관계 명확화와 함께 마산 및 광주 지역 민주화운동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경상남도과 창원시는 지역범위에 마산지역 외 타 지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3·15의거의 상징성 및 역사적 사실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임.

광주광역시는 의견없음을 통보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3